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-2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2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여 법령 해석상의 중의성을 해소하고, 병역명문가를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국가유공 및 병역 이행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원칙 추가[안 제3조(원칙)]
- 나. 주민자치위원과 고문 임기 규정 명확화[안 제17조(구성 등)]
- 다.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 추가[안 제20조(해촉)]
- 라. 병역명문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에 추가[(안 별표2)]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
- 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정의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6. 1. 29.~2026. 2. 19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[법무팀 의견]

관 계 법 령	「지방자치법」
법무팀 검토의견	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고 국가유공 및 병역 이행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병역명문가를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참고사항	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달성하기 위하여”를 “위하여”로 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조장”을 “진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“배제”를 “배제(다만,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

제6조제1항 중 ““시설등””을 ““시설 등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설 등”을 “시설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설등을”을 “시설 등을”로, “시설등의”를 “시설 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설등의 설치가”를 “시설 등의 설치가”로, “시설등의 설치계획”을 “시설 등의 설치계획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시설등”을 “시설 등”으로, ““사용료등””을 ““사용료 등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사용료등”을 각각 “사용료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제1항, 제2항 및 제3항 중 “시설등”을 각각 “시설 등”으로 하고, 같은

항 중 “주민은 선량한”을 “선량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다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”을 “따라 징수대상 시설등을 이용한 경우 사용료 등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사용료등”을 “사용료 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 중 “시설등”을 “시설 등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후단 중 “이 경우”를 “당연직 고문의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고문”을 “제1항에 따른 3인 이내 별도의 고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동장은 고문을 포함한”을 “동장은 고문(당연직 고문과 제5항에 따른 고문을 모두 포함하여, 이하 “고문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 및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”을 “위원과 제5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위원 및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의 임기”를 “임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있고,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유고 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”를 “있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사고 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및 전임 부위원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위원 및”을 “위원과 제17조제5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6호”를 “제7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위원이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두 개 이상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
위원으로 선정된 경우

제23조제1항 본문 중 “고문을 포함한 위원”을 “위원 및 고문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 감면대상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(제10조제5항 관련)

감 면 대 상	감면비율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전액면제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	50%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	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	20%

※ 수강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1인당 1개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,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자치회관”이란 제1조의 목적을 <u>달성하기 위하여</u>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(이하 “동”이라 한다)에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 <u>위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원칙) 제2장에서 정한 자치회관과 제3장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<u>조장</u>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5. 정치적 이용 목적의 <u>배제</u>. <u>다만,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.</u>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원칙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 <u>진흥</u>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배제(다만,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)</u></p> <p>6. <u>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</u></p>
<p>제6조(시설 및 프로그램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</p>	<p>제6조(시설 및 프로그램) ① ----- -----</p>

강료 등(이하 “사용료등”이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,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.

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⑥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

----- “사용료 등”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사용료 등-----

-----.

④ 사용료 등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다.

⑦ · ⑧ (생략)

제11조(이용 등)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④ · ⑤ (생략)

제14조(보고) ① (생략)

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에 대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자치회관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~ 5. (생략)

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이용 등) ① -----
----- 시설 등-----
--.

② ----- 시설 등-----
----- 선량한 -----

--.

③ ----- 따라 징수대
상 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 사용
료 등-----
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사용료
등-----

-----.

제16조(기능) ① -----

--.

1. ----- 시설 등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⑦ 위원 및 당연직 고문을 제외 한 고문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 및 당연직 고문을 제외 한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2. 위원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,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유고 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<신 설>

⑧ ~ ⑩ (생략)

제20조(해촉)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-----.

⑦ 위원과 제5항에 따른 -----

-----.

1. 임기-----

-----.
2. -----

----- 있다.

3.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사고 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및 전임 부위원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⑧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해촉) ① ----- 위원과 제 17조제5항에 따른 -----

제7호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6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23조(실비보상 등) ① 고문을
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
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
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
지급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[별표 2]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
감면기준(제10조제5항 관련)

6. 위원이 제15조에 따라 설치
된 두 개 이상의 주민자치
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선정된
경우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실비보상 등) ① 위원 및
고문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[별표 2]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
감면기준(제10조제5항 관련)

감 면 대 상	감면비율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전액면제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
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50%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	20%

※ 수강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1인당 1개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,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감 면 대 상	감면비율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전액면제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	50%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	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	20%

※ 수강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1인당 1개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,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: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0조(사용료 등)
2. 비용추계의 전제: 2025.1. 기준 병역명문가 지정현황(마포구: 134개)
병역명문가를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대상에 포함할 경우, 기존 감면대상자와의 중복을 고려하여 134개 가문 중 67개 가문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며, 50% 감면률을 적용할 경우 월평균 수강료 19,597원 기준 1인당 월 9,799원의 감면액이 발생. ※연비용:19,597원*0.5*67명*12월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						
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○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로 자원(병역명문가)	7,878	7,878	7,878	7,878	7,878	39,390
	소계(b)	7,878	7,878	7,878	7,878	7,878	39,390
	□ 총 비용(a-b)	7,878	7,878	7,878	7,878	7,878	39,390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의존 재원	소계						
	시비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계						
	지방세수입						
	세외수입 등						
지방채							
민간자본							
구비		7,878	7,878	7,878	7,878	7,878	39,390
합계		7,878	7,878	7,878	7,878	7,878	39,390

5. 덧붙이는 의견

- 병역명문가 가문 수: 대표자 1인으로 산정
- 구민 1인 1강좌지원으로 중복감면 가능성 염두하여 보수적 추계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이해정
연락처	02-3153-8312